

2021년 소방공무원법 기본서 정오표(2021.8.1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9 (1) ㉠ (법 개정 21.1.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p 52 (2) ㉡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p 68 (1) ㉢	과원이 되어 과원이 되어	과원이 되어
p 142 (1) ㉣㉤	취소의 확대	취소의 확정
p 151 정답 표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p 192 위 도표	서울방재종합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p 386 21번 문제 해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p 388 27번 문제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p 427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제24호, 2021.3.8.)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가.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나호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라호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p 445 및 p 463 32번 문제 해설 도표 수정

	비위중 고의	비위중·중과실 비위경·고의	비위중·경과실 비위경·중과실	비위경 경과실
부작위·직무태만·회계질서문란 복종의무 위반(업무 중대차질)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품위유지위반(성폭력, 미성년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품위유지위반(상습적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품위유지위반(기타 성매매·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비밀엄수 의무 위반(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친절공정·겸직금지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소방공무원교육훈련 개정 [대통령령 제31652호 개정·시행, 2021. 4. 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등에서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으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조정함

2. 개정 내용

1) 제2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둔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제3조 제2항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해야** 한다.

3) 제3조의2 신설

제3조의2(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25조 보완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76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위원회는 소방청과 시·도에 설치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 ④ 위원은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중앙소방학교장,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등이 된다.

② 틀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둔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1항)

③,④ 맞음,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중앙소방학교장,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77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 ②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
- ③ 교수요원의 양성 및 교수요원의 상호 활용
- ④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협의사항(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1항)

- ㉠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
- ㉤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
- ㉥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 ㉦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